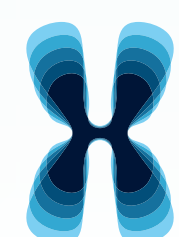




WHO의 ICD-11 공표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주는 시사점

들어가며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22년 초 국제질병분류 제11차 개정판(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1th Revision, ICD-11)을 발표함
- 현재 사용중인 ICD-10은 1992년도에 도입되어 지난 30년 동안 사용된 것으로, 세계 각 국은 ICD-11을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 최근 국제보건정보관리총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Associations, IFHIMA)에서는 세계 각 국가가 ICD-11에 대한 이행 전략을 어떻게 준비하고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나 구체적인 관련기관 및 활동내용은 없었음
- 이는 ICD-11의 공표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현재 ICD-11의 이행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각국의 현황이나 활동 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임
- ICD-11 개정의 주요 변화와 특징, ICD-11의 국내·외 도입현황 등을 알아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에서 고려해야 할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ICD-11의 주요 변화

■ 기본코드 구조 변화

ICD-10은 'A00.0-Z99.9' 범위내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 약 14,400여개 코드였으나, ICD-11은 '1A00.00-ZZ9Z.ZZ'의 범위로 34,194개(2023년 1월 기준)의 코드로 구성됨 (코드 중 알파벳 'I'와 'O'는 숫자 '1', '0'과의 혼동을 우려 제외 함)

■ 다양한 용어표기 방식의 도입

'선조합(precoordination)', '후조합(post-coordination)' 방식의 도입 — 사전에 정해진 코드와 이를 슬래시(slash, "/")와 앰퍼샌드(ampersand, "&")를 연계 이용하여 다양하게 질병을 코딩함

■ 다양한 정보 제공 툴과 의견수렴

ICD-10의 제1권 분류표, 제2권 지침서, 제3권 색인 구성을 ICD-11은 웹에서 각각 보기 ('Browse'), 정보('Info'), 코딩도구('Coding Tool')로 대체하고, 특이사항보기('Special views')를 별도로 두어 감염체(infectious agents) 정보를 제공함. 기타 웹에 사용자 편의성(User interface) 향상 및 아이디어 제안 등의 기능을 둠

표1. ICD-10과 ICD-11의 코딩체계 기본구조 변화(출처: 김혜지 등. 2022)

No.	ICD-10 ¹			ICD-11 ²		
1	I	A00-B99	Certain infectious and parasitic diseases	01	1A00-1H0Z	Certain infectious or parasitic diseases
2	II	C00-D48	Neoplasms	02	2A00-2F9Z	Neoplasms
3	III	D50-D89	Diseases of the blood and blood-forming organs and certain disorders involving the immune mechanism	03	3A00-3C0Z	Diseases of the blood or blood-forming organs
4	IV	E00-E90	Endocrine, nutritional and metabolic diseases	04	4A00-4B4Z	Diseases of the immune system
5	V	F00-F99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05	5A00-5D46	Endocrine, nutritional or metabolic diseases
6	VI	G00-G99	Diseases of the nervous system	06	6A00-6E8Z	Mental, behavioural or neurodevelopmental disorders
7	VII	H00-H59	Diseases of the eye and adnexa	07	7A00-7B2Z	Sleep-wake disorders
8	VIII	H60-H95	Diseases of the ear and mastoid process	08	8A00-8E7Z	Diseases of the nervous system
9	IX	I00-I99	Diseases of the circulatory system	09	9A00-9E1Z	Diseases of the visual system
10	X	J00-J99	Diseases of the respiratory system	10	AA00-AC0Z	Diseases of the ear or mastoid process
11	XI	K00-K93	Diseases of the digestive system	11	BA00-BE2Z	Diseases of the circulatory system
12	XII	L00-L99	Diseases of the skin and subcutaneous tissue	12	CA00-CB7Z	Diseases of the respiratory system
13	XIII	M00-M99	Diseases of the musculoskeletal system and connective tissue	13	DA00-DE2Z	Diseases of the digestive system
14	XIV	N00-N99	Diseases of the genitourinary system	14	EA00-EM0Z	Diseases of the skin
15	XV	O00-O99	Pregnancy, childbirth and the puerperium	15	FA00-FC0Z	Diseases of the musculoskeletal system or connective tissue
16	XVI	P00-P96	Certain conditions originating in the perinatal period	16	GA00-GC8Z	Diseases of the genitourinary system
17	XVII	Q00-Q99	Congenital malformations, deformations and chromosomal abnormalities	17	HA00-HA8Z	Conditions related to sexual health
18	XVIII	R00-R99	Symptoms, signs and abnormal clinical and laboratory findings, not elsewhere classified	18	JA00-JB6Z	Pregnancy, childbirth or the puerperium
19	XIX	S00-T98	Injury, poisoning and certain other consequences of external causes	19	KA00-KD5Z	Certain conditions originating in the perinatal period
20	XX	V01-Y98	External causes of morbidity and mortality	20	LA00-LD9Z	Developmental anomalies
21	XXI	Z00-Z99	Factors influencing health status and contact with health services	21	MA00-MH2Y	Symptoms, signs or clinical findings, not elsewhere classified
22	XXII	U00-U99	Codes for special purposes	22	NA00-NF2Z	Injury, poisoning or certain other consequences of external causes
23				23	PA00-PL2Z	External causes of morbidity or mortality
24				24	QA00-QF4Z	Factors influencing health status or contact with health services
25				25	RA00-RA26	Codes for special purposes
26				26	SA00-SJ3Z	Supplementary Chapter Traditional Medicine Conditions - Module 1
27				V	VD00-VW8Z	Supplementary section for functioning assessment
28				X		Supplementary section for functioning assess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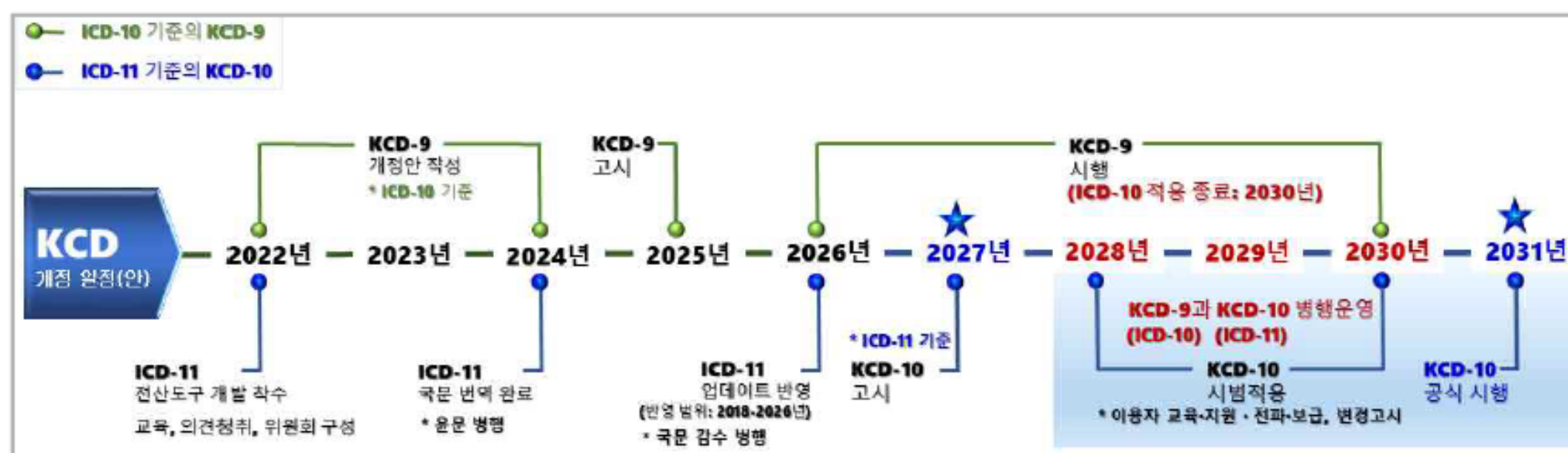
¹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revision.
²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1th revision.

- STEMCODE1
- STEMCODE1/STEMCODE2
- STEMCODE1/STEMCODE2/STEMCODE3
- STEMCODE1/STEMCODE2&EXTENSIONCODE1
- STEMCODE1&EXTENSIONCODE1/STEMCODE2&EXTENSIONCODE2

그림1. 스템코드와 ICD-11의 용어 표기 방식 (출처: Chute CG 등. 2022)

ICD-11 국내·외 도입현황

- 한국:**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세계보건기구(WHO-FIC)의 한국협력센터이며, 통계청은 2031년 까지의 개략적인 ICD-11 도입을 위한 로드맵(안)을 가지고 있음
- 미국:** 국가보건의료생명통계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Vital and Health Statistics, NCVHS)가 실무조직을 구성하여 연방정부에 ICD-11 도입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권고 하고 있음
- 호주:** WHO-FIC 호주협력센터는 호주보건복지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AIHW)로, 현재 주도적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필드테스트, 정기적 자국내 활동 공유 등의 활동을 수행 중임
- 캐나다:** 캐나다 보건정보연구소(The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CIHI)는 캐나다 통계청과 함께 세계보건기구(WHO-FIC)의 협력센터로 ICD-10 및 ICD-11 관련 업무 수행. 연방, 주정부 등에서 ICD-11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이에 대한 실무 업무를 담당할 예정임
- 프랑스:** WHO-FIC 협력센터는 디지털헬스정보원(Agence Du Numerique En Sante, ANS)이며, ANS는 보건의료용어 표준화를 담당하는 기관임. 기타 병원입원환자 통계를 산출하는 병원입원정보분석원 (Agence Technique de l'information sur l'hospitalisation, ATIH), 보험자 건강보험 청구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기금(Caisse Nationale de l'Assurance Maladie, CNAM) 등이 ICD-11 도입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제9차 및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병행운영 일정(안), 향후 의견수렴 등을 통한 변경 가능성 있음]

그림 2. 국내 ICD-11 도입 일정(안) - 통계청(자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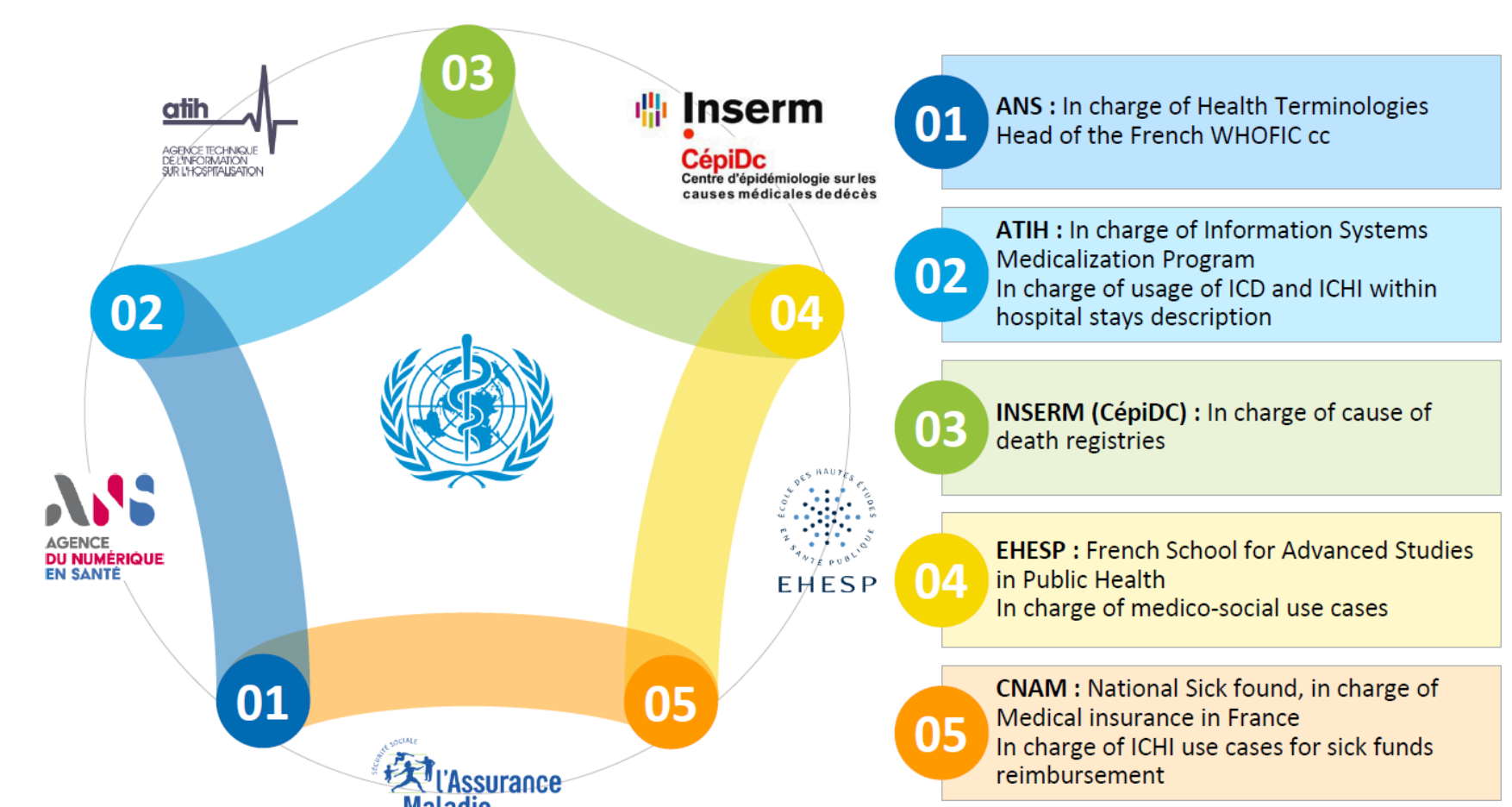


그림3. 프랑스의 ICD-11 도입과 관련된 주요 기관 현황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주는 시사점

- 01 ICD-10에서 보다 자세한 상병 표현이 가능한 ICD-11으로 급격히 변화하기 때문에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됨
- 02 변화된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
- 03 심사평가원에 청구되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변화는 필연적임. 현재 사용되고 있는 ICD-10기반의 KCD-80이 ICD-11을 기반으로 하는 후속 버전으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04 ICD-11 코딩 데모 버전, 교육, 청구 실습, 명세서 변화, 연구 및 시뮬레이션 등이 요구됨
- 05 WHO와 기타 제 외국과의 지속적 협력을 통한 도전 극복이 필요함
- 06 이해관계자 분석, ICD-11의 도입을 위한 로드맵 완성, ICD-11 관련 실증 연구 및 파급효과 평가, ICD-10과 ICD-11의 매핑 테이블 완성 및 제공, ICD-11의 한국어 번역, ICD-11에 기반 한 국내질병분류버전 개발, ICD-11의 확산을 위한 범국가적 협의체 구성 등이 필요함

나가며

- ICD-11은 이전 버전인 ICD-10과 비교하여 구조 및 표기방식에 많은 혁신적인 변화를 포함하고 있으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 세계 각국은 나름대로 정부와 민간 이해관계자가 ICD-11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활동하고 있었음
- 질병 및 사망통계의 기초가 ICD-11에 기반 한다는 측면에서 이의 국내 도입은 하나의 과제이며, 도입이 전제된다면 적극적인 대처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도입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부패·공익신고

비실명 대리신고와 함께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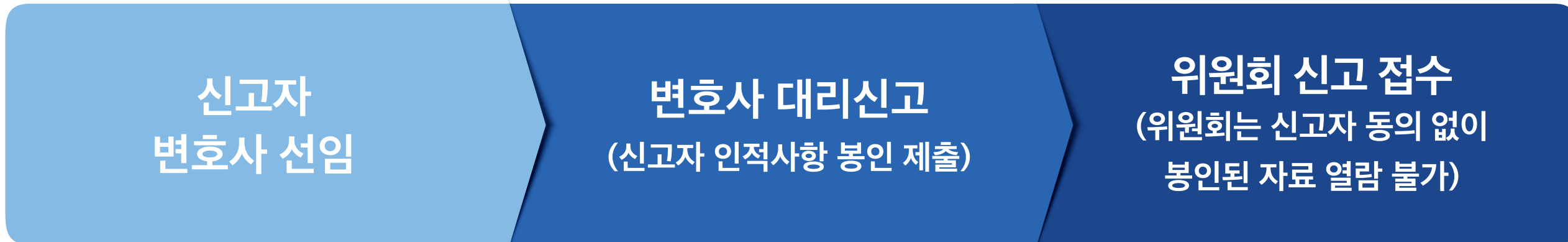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하여 변호사 명의로 신고 접수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봉인되어 신분 유출 원천 차단



비실명 대리신고 이용 방법



- 내부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대리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자문변호사 명단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서 확인하세요.
-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포함), ▲ 공익침해행위,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에 대해 비실명 대리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 신고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하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징계·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 신고를 이유로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징계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국번없이 1398 또는 110